

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안내

1. 법적 근거

-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는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으로,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제28조(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)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.**

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절차·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공개행사 정의

-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(實演)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3. 공개행사 기간 및 지원기준

- 행사기간 : 2020. 1. 1.~ 10. 31. 까지

※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기간은 10월 31일 까지, 정산은 11월 30일까지 완료.

단, 부득이한 경우 행사일정은 재단과 협의 후 조정

- 지원기준 : 예능/기능 보유자 700만원 이내

예능/기능 보유단체 1,100만원~2,000만원 이내 [☞3 공개행사 지원기준 참조](#)

※ 재단 주관 합동공개행사는 지원금 일부(출연료/시연료 등) 지원

4. 공개행사 내용 및 방법

-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해당 종목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반드시 **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개최**하여야 합니다. 공개행사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.

- 개별 공개행사 : 보유자/보유단체가 주관하는 보유자/보유단체 단위의 행사
- 연합 공개행사 : 2종목 이상 보유자/보유단체가 연합하여 주관하는 행사
- 합동 공개행사 : 문화재청에서 위임한 ‘한국문화재단’이 주관하는 행사

- **공개행사 개최시기**는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되,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준비하셔야합니다. (주말이나 휴일 포함 등) 다만, 기능 종목의 경우 **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**하여야 합니다.
- **공개행사 개최 장소**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전승자 이외의 국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.
-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연행을 중심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예능 종목의 경우 ‘완창, 전 과장 등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’으로 하고, 기능 종목의 경우 ‘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을 3일 이상 전시하는 것’으로 합니다.

* 전통공예품을 제작하는 전통기술 분야의 경우,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 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음

- 전시작품에는 전년도의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함
- 영상물은 공정별로 편집하고 설명문을 삽입하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전승공예품과 함께 전시하여야 함

(영상물은 결과보고서와 함께 한국문화재단에 제출)

※ 영상제작 사양 : 영상물은 Full HD 방식으로 촬영하며 제작사양은 화면사이즈 1920*1080으로 제작함

- 보유자는 공개행사 기간 중 기존 실연시간에 준하여 작품 및 기술 설명,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응대에 성실히 임해야 함

- 공개행사는 **보유자(보유단체)가 직접 참여하여 실연**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보유자 등은 공개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- 보유자(보유단체)의 공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영상(사진)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.
- **공개행사 경비 지원**은 2020년도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
하며, 종목별 특성 및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『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기준』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공개행사 지원 기준

(단위 : 만원)

구분	분야	지원 상한액	지 원 대 상
개인	예능	700만원	○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개인 14개 종목 - 보유자 35명
	기능(공예)	700만원	○ 국가무형문화재 기능(공예) 개인 54개 종목 - 보유자 71명
단체	국가제례	2,000만원	○ 사직대제 * 종묘제례(종묘대제 봉행행사 지원예산으로 집행)
		1,500만원	○ 석전대제(춘·추/2회)
	민간의례 (6단체)	1,300만원	○ 영산재, 연등회, 삼화사수륙재, 진관사수륙재, 아랫녘수륙재, 불복장작법
	축제성 놀이와 의식 (9단체)	1,800만원	○ 은산별신제, 안동차전놀이, 영산쇠머리대기, 영산줄다리기, 광주칠석고싸움놀이, 경산자인단오제, 법성포단오제, 기지시줄다리기 * 강릉단오제(유네스코 등재종목 지원예산으로 집행)
	무속, 놀이굿 (10단체)	1,100만원	○ 양주소놀이굿, 제주칠머리당영등굿, 진도씻김굿, 동해안별신굿,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, 위도띠뽀놀이, 남해안별신굿, 황해도평산소놀이굿, 경기도도당굿, 서울새남굿
	농악 농요 무용 탈춤 무예 (38단체)	1,100만원	○ 종묘제례악(종묘대제, 사직대제/2회), 진주삼천포농악, 평택농악, 이리농악, 강릉농악, 임실필봉농악, 남원농악, 김천금릉빛내농악, 진주검무, 구례잔수농악, 승전무, 선소리산타령, 학연화대합설무, 피리정악 및 대취타, 남도들노래, 구례향제줄풍류, 이리향제줄풍류, 고성농요, 예천통명농요, 양주별산대놀이, 통영오광대, 고성오광대, 북청사자놀이, 봉산탈춤, 동래야류, 강령탈춤, 수영야류, 송파산대놀이, 은율탈춤, 하회별신굿탈놀이, 가산오광대, 진도다시래기, 강강술래, 좌수영어방놀이, 밀양백중놀이, 처용무, 택견, 제주민요
	공예단체 (3단체)	1,100만원	○ 면천두견주, 명주짜기, 삼베짜기

※ 재단 주관 공개행사(합동)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기준과 상이함

6. 보유자(보유단체) 주관 공개행사 계획

- 보유자(보유단체)가 주관하는 공개행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는 공개행사입니다.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개별 공개행사와 2종목 이상 보유자/보유단체가 연합하여 주관하는 연합 공개행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기준
 - 예능/기능 보유자 700만원 이내
 - 예능/기능 보유단체 1,100만원~2,000만원 이내<p3 공개행사 지원 기준 참조>
※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[개별/연합 공개행사 대관 지원]

1) 국립무형유산원

- 일 자 : 2020년 1월 ~ 10월 중
* 4월~11월 중 상설공연(매주 토·일요일) 일정 제외
- 장 소 : 국립무형유산원(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)
* 대공연장(398석/828㎡), 소공연장(184석/193㎡)
- 신청방법 : 희망 보유자(단체)가 국립무형유산원 대관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(063-280-1423)를 통해 대관
- 지원사항 : 무료장소제공, 기본설비(음향·조명), 지원금(전액)



<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>



<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>

2)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

- 일자/횟수 : 2020년 1월 ~ 10월 중
- 장 소 : 민속극장 풍류(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)
* 풍류극장(반원형돌출무대) 공연장(164석)
- 신청방법 : 희망 보유자(단체)가 민속극장 풍류 대관 완료시 확인 후 대관료 지원

* **(대관신청방법)** 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chf.or.kr/c1/sub9_5.jsp)에서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, 이메일 접수(pungnyu@chf.or.kr)

- 대관기간 란에 희망 대관일 기입(1지망, 2지망 작성)

(매주 목요일 민속극장 풍류 상설공연 관계로 대관불가)

◦ 지원사항 : 무료장소제공, 기본설비 및 스태프, 지원금(전액)



<민속극장 풍류 공연장 전경>



<민속극장 풍류 공연장 내부>

3) 서울돈화문국악당

◦ 기 간 : 2020년 1월~10월 중

◦ 장 소 : 서울돈화문국악당(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02)

* **실내 공연장(140석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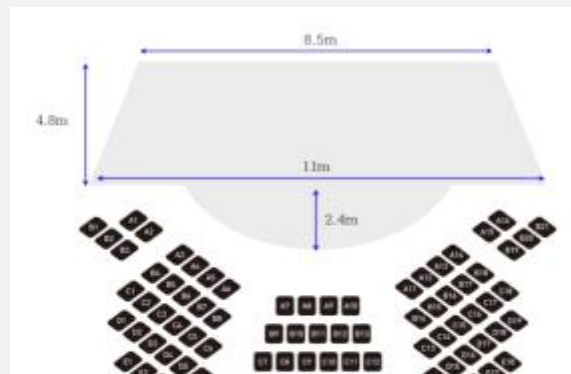
◦ 신청방법 : 희망 보유자(단체)가 서울돈화문국악당 정기대관에 선정되었거나 추후 대관을 완료하면 확인 후 대관료 지원

(문의 : 02-3210-7010)

◦ 지원사항 : 기본 대관료, 기본설비(음향·조명), 지원금(전액)



<서울돈화문국악당 공연장>



<서울돈화문국악당 무대 규모>

4) 국립국악원

◦ 기 간 : 2020년 1월 ~ 10월 중

◦ 장 소 : 국립국악원(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)

* **우면당(231석), 풍류사랑방(130석)**

◦ 신청방법 : 희망 보유자(단체)가 국립국악원 정기대관에 선정되었거나 추후 대관을 완료하면 확인 후 대관료 지원

(문의 : 02-580-3042)

◦ 지원사항 : 기본대관료, 지원금(전액)



<국립국악원 우면당>



<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>

5) 국립부산국악원

- 기 간 : 2020년 1월 ~ 10월 중
- 장 소 : 국립부산국악원(부산시 부산진구 국악로2)
* 연악당(686석), 예지당(276석)
- 선정방법 : 희망 보유자(단체)가 국립부산국악원 정기대관에 선정되었거나 추후 대관을 완료하면 확인 후 대관료 지원
(문의 : 051-811-0114)
- 지원사항 : 기본대관료, 지원금(전액)



<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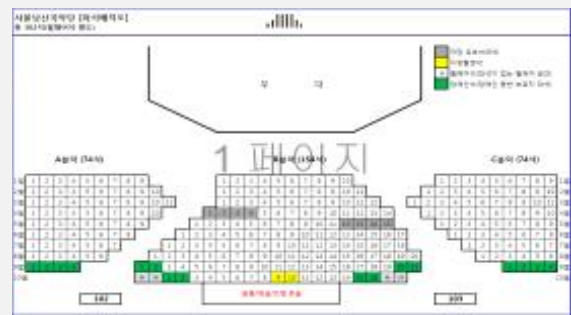
<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>

6) 서울남산국악당

- 일 자 : 2020년 1월~10월 중
- 장 소 : 서울남산국악당(서울시 중구 퇴계로34길 28)
* 크라운해태홀(302석)
- 신청방법 : 희망 보유자(단체)가 서울남산국악당 정기대관에 선정되었거나 추후 대관을 완료하면 확인 후 대관료 지원
(문의 : 02-2266-0513)
- 지원사항 : 기본대관료, 지원금(전액)



<서울남산국악당 공연장>



<서울남산국악당 무대 규모>

7. 합동(재단 주관) 공개행사 계획

- 기능종목 일부는 재단이 주관하는 공개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 재단주관 공개행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에 장소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원기준
 - 기능보유자/보유단체 : 지원금 일부 지원(시연비, 재료비 등)

1. 2020년 ‘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’ 합동공개행사

- 기 간 : 2020.9.25.(금) ~ 9.27.(일)
- 장 소 : 국립무형유산원 얼썬마루
- 대 상 : 14명
- 선정방법 : 신청 건에 대해 종목의 특성 및 장소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
- 지원사항

구 분	지원내용	지원금
시연비	작가구분 및 시연일수에 따라 차등지급	· 보유자 : 3일 1,000,000원 · 전수교육조교 : 1일 150,000원 / 3일 450,000원 · 이수자 : 1일 100,000원 / 3일 300,000원 · 전수자 : 1일 50,000원 / 3일 150,000원
재료비	시연 및 작품제작, 체험을 위한 재료비 지원	· 시연재료비 : 각 종목별 1,500,000원 이내 · 체험재료비 : 각 종목별 1,000,000원 이내 ※ 정산서 별도 제출

※ 재료비 행사개막 전 지급하며 시연비는 정산서 제출 후 지급
 ※ 체험재료비 상향지원 (50만원 → 100만원)

8. 공개행사 신청(비용 포함)

-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계획서 및 비용신청서 제출
 - 신청기한 : 2019년 2월 10일(월)
 - 제출방법 : 등기우편,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접수
 - 제출처 : (우)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, 5층(삼성동 112-2번지)
한국문화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
공개행사 담당자
 - 담당자 : 박용순 (02-3011-2153)

9. 공개행사의 변경 및 취소

-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변경(취소) 신청서 제출
 - 변경(취소)신청 : 공개행사 계획서 제출 후 행사기간, 장소 등 변경(취소)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행사일 1개월 전(지원금 지급 1개월 전)까지 변경(취소) 신청서 제출
 -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(open@chf.or.kr) 이용
 - 제출처 : (우)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, 5층(삼성동 112-2번지)
한국문화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
 - 담당자 : 박용순(02-3011-2153)

10. 공개행사 결과 보고

-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제출
 - ※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까지 제출합니다.
 - 제출기한 :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
 - 제출방법 : 등기우편, 이메일(open@chf.or.kr) 이용
 - ※ 이메일 또는 사본 제출 시 원본 결과보고서(정산자료포함) 5년 의무보관
 - 제출처 : (우)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, 5층(삼성동 112-2번지)
한국문화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
 - 담당자 : 박용순(02-3011-2153)

※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[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-2호]

-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.
-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**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**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※ 제출서류 서명(날인) 주의사항

: 개인종목은 본인명의, 단체종목은 **단체명의를** 서명(날인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<붙임>
1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계획서
 2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
 3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
 4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
 5. 국가무형문화재 재단 주관 합동 공개행사 신청서
 6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(정산 및 실적보고서)

2020년

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사업 관련 서식

【계획서, 비용신청서, 변경신청서, 취소신청서, 합동공개행사 계획서, 결과보고서 등】

□ 차 례

※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1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계획서 2 페이지
2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 4 페이지
3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 6 페이지
4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 7 페이지
5. 국가무형문화재 재단 주관 합동 공개행사 신청서 8 페이지
- 6-1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9 페이지
- 6-2. 공개행사(국고보조사업) 정산 및 실적보고서 11 페이지

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

지정번호	국가무형문화재 제 호	명칭	
행 사 명	<예시>국가무형문화재 제○호 ○○○ 공개행사		
공개날짜/시간	<예시> 2020. 00. 00. (목) 00:00~00:00	공개장소	* 정확한 장소명 표기
공개장소 주소	* 정확한 도로명 주소 표시 (네비게이션 검색 확인)	연락처	지역번호) 000-0000 * 행사문의 가능한 내선번호 (휴대전화번호 사용불가)
출 연 자 (00명)	보 유 자		
	전수교육조교		
	이 수 자		
	전 수 생		
소요예산	금 원(W)		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보유자(보유단체 대표) (서명 또는 인)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귀하			

백상지(80g/㎡)

(뒤쪽)

1. 공개 세부계획(공개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)			
2. 공개 소요예산내역 * 자부담 비용을 포함하여 공개행사에 소요되는 총 금액을 기재(지원금 예산 증액신청 근거자료로 활용됨)			
지출항목	금액 (단위: 원)	산출내역	비 고 (국고/자부담 등)
출연료(시연료)			
재료비			
홍보비			
진행비			
합계			국고 자체

※ 첨부 : 비용 신청서 및 통장사본

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비용 신청서

신청자	주소					
	기관명		담당자 (성명 이메일 기재)	* 업무담당자 성명 기재해주세요		
	대표자명		전화번호	*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해주세요		
	주민등록번호		고유번호 (사업자번호)			
신청액	금 원(₩)					
총행사비 (단위:천원)	계	국고보조금	지방비	기금	자부담	기타
은행정보	○ 은행명 : ○ 예금주 : ○ 계좌번호 :					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년 월 일 보유자(보유단체 대표) (서명 또는 인)						
한국문화재단 이사장 귀하						

백상지(80g/m²)

○ 첨 부

통장사본 첨부

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

지정번호	국가무형문화재 제 호	명칭	
행 사 명			
변경사유			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	
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보유자(보유단체 대표) (서명 또는 인)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			

백상지(80g/㎡)

[별지 제4호서식]

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

지정번호	국가무형문화재 제 호	명칭	
행 사 명			
공개일시			
공개장소			
취소사유			
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보유자(보유단체 대표) (서명 또는 인)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귀하			

백상지(80g/m²)

[별지 제5호서식] <※ 재단 주관(합동) 공개행사를 희망하시는 분만 작성 바랍니다>

국가무형문화재 재단 주관(합동) 공개행사 신청서					
지정번호	국가무형문화재 제 호	명 칭			
행 사 명	2020년 기능 합동공개행사				
공개날짜	2020년 9월 25일~ 27일 (3일)				
공개장소	국립무형유산원 일주문(전주)				
	※ 재단 주관 (합동)공개행사에 선정이 안 될 경우 개별 공개행사로 전환되며, 추후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
출 연 자 (실연자)	보 유 자				
	전수교육조교				
	이 수 자				
	전 수 생				
* 보유자 및 전승자 실연비와 여비는 공개행사 사례 기준에 따라 지급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보유자(보유단체 대표) (서명 또는 인)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귀하					

백상지 (80g/m²)

국가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세부계획

성 명	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_____(종목) 보유자_____	
시연 및 체험내용 상세기재 * 시연일정에 따라 모니터링 예정입니다. * 도록 및 홍보에 활용할 목적입니다. ex) 시연 품목과 기법	1일차 - 시연) - 체험)	
	2일차 - 시연) - 체험)	
	3일차 - 시연) - 체험)	
재료비 신청금액 (최대 1,500,000원)	신청금액 : 1,500,000 원	
체험 신청여부 (최대 1,000,000원)	☐ 신청함 (신청금액 : _____ 원)	☐ 신청안함
	체험내용 :	
숙박시설 신청일정 * 해당하는 곳에 V 표시와 숙박하실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.	☐ 9. 24. (목) ~ 9. 27. (일) (3박 4일)	인 원 명
	☐ 9. 25. (금) ~ 9. 27. (일) (2박 3일)	인 원 명

국가무형문화재 공개결과보고서

지정번호	국가무형문화재 제 호			명칭		
행 사 명						
공개날짜				공개장소 (주 소)		
출연자	보 유 자					
	전수교육조교					
	이 수 자					
	전 수 생					
집행금액	계	국비	지방비	기금	자체부담	기타
관람인원	명					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를 보고합니다. 년 월 일 보유자(보유단체 대표) (서명 또는 인)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귀하						

백상지(80g/㎡)

(뒤쪽)

1. 공개 세부 집행내역(각 항목별로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)		
구 분	금 액	산 출 내 역
출연료		
재료비		
홍보물 제작		
대관료		
합 계		
2. 공개 출연자 명단		
구 분	인 원	출 연 자 명 단
3. 제작과정 영상물 별도 제출 (전시로 시연을 갈음한 경우)		
4. 기타(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첨부)		

공개행사(국고보조사업) 정산 보고서

1. 보조사업명 : (제 호 종목명)

2. 보조사업개요

☐ 목 적

☐ 사업기간

☐ 사업내용

3.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(총괄표)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	국고	지방비	기금	자부담	기타
교부액						
집행액						
잔 액						

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2020. . .

한국문화재단 이사장 귀하

사업 실적 보고서

I. 사업개요

1. 사 업 명 :
2. 사업기간 :
3. 사업장소 :
4. 사업내용 :

II. 사업실적(성과)

1. 출연자(출품자) : 명

전송자	성명	비고
■보유자		
■전수교육조교		
■이수자		
■전수생 등		

2. 관람인원 :
3. 주요성과
 -
 -
4. 문제점
5. 다음 행사시 보완사항
 -
6. 건의사항

III.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

구분	항목	교부액	집행액		집행잔액
			금액	세부내역	
국고	소계				
	○			○	
	○			○	
자부담	소계				
				○	
합계					

첨부 :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(송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홍보인쇄물 등)

지원금 증빙서류 지출내역

1. 국고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을 예산항목 순서 별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
2. 증빙서류 : 지급내역서(서식참고), 입금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

<국고 지원금>

총합계 원

1. 출연료

1-1. 계좌이체 지급내역서

[illegible]

2. 재료비

2-1. 계좌이체 및 지출 지급내역서

지급 일자	사례 내용	성명/상호명	이체금액 (지급액)	생년월일/사업자번호	연락처	비고
합계		건	원			

3. 홍보비

3-1. 계좌이체 및 지출 지급내역서

지급 일자	사례 내용	성명/상호명	이체금액 (지급액)	생년월일/사업자번호	연락처	비고
합계		건	원			

4. 대관 및 임차비

4-1. 계좌이체 및 지출 지급내역서

지급 일자	사례 내용	성명/상호명	이체금액 (지급액)	생년월일/사업자번호	연락처	비고
합계		건	원			

5. 진행비

5-1. 계좌이체 지급내역서

지급 일자	사례 내용	성명/상호명	이체금액 (지급액)	생년월일/사업자번호	연락처	비고
합계		건	원			

지원사업결과 증빙자료

1. 지원사업 행사 및 진행사진을 아래규격으로 출력하여 첨부
 - 사업장소 전경, 출연진이나 강사, 관객이나 참여자, 진행과정 등
2. 도록, 팸플렛, 발간책자 등 인쇄물 각 1부
 - 인쇄물은 지원연도, 대표자명(단체명)을 표기한 라벨지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

〈진행사진〉

<사진자료 등을 붙여주세요>

※ 붙임공간이 부족할 경우 여러 장에 나누어 붙임 가능

〈구입 소품 사진〉

<사진자료 등을 붙여주세요>

※ 붙임공간이 부족할 경우 여러 장에 나누어 붙임 가능

〈통장사본〉

<지원금 입금 시부터 소진까지 모든 입출금 내역>